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092
----------	------

2019년 12월 19일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9.10.16. 노식래 의원 대표발의(경만선 의원 외 16명 찬성)

나. 회부일자 : 2019.10.22.

다. 상정 일자 : 제290회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

- 2019년 12월 19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의안이 발의된 후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수정될 경우 수정안과 위원회 제안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서 수정한 의안과 위원회에서 제안 하는 의안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3조제3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선희)

1 개정안의 개요 및 취지

- 본 개정안은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제출된 의안을 수정하거나 의안을 제안하는 경우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시 비용추계서 첨부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의안 심사 및 의결의 실효성과 정당성을 높이고자 제안된 것임.

2

긴급한 사유가 있을 시, 의안의 수정안과 위원회 제안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첨부 생략(안 제3조제3항)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는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 비용추계서 첨부 의무화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의무 조항에도 불구하고,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비용이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추계가 어려운 경우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거나, 상위법령 개정 및 기관(조직) 변경에 따른 조례 개정의 경우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단순 자구 수정의 경우 비용추계서 첨부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조례” 제3조제1항, 제3조제2항, 제3조제3항).
- “조례”는 이와 같은 단서 조항을 통해 비용추계서 첨부 생략을 허용하는 경우를 나열하고 있지만, 상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마련된 수정안과 위원회 제안 의안에 대해서는 촉박한 본회의 일정으로 인해 비용추계서 첨부 없이 제출하는 관행이 반복되어 왔음.

- 본 개정안은 이렇게 수정안과 위원회 제안 의안이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는 경우에 대해 그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의안 심사와 의결의 실효성과 적법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임.

<표-1>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② (생략)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② (현행과 같음)
<신설>	③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서 수정한 의안과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의안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3 종합 의견

- 본 개정안은 상임위원회의 의안 심사 과정에서 마련된 수정안과 위원회 제안 의안이 촉박한 본회의 일정으로 인해 비용추계서 첨부 없이 본회의에 제출되는 관행에 대해 그러한 생략을 허용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의안 심사와 의결의 실효성과 정당성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목적과 개정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토 론 요 지 : 없음.

7.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13명 전원 찬성)

8. 소수 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식래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092
----------	------

발의년월일 : 2019년 10월 16일

발 의 자 : 노식래 의원 (1명)

찬 성 자 : 경만선, 권수정, 김경영, 김정태,
김제리, 문장길,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안광석, 오현정, 이석주,
이영실, 최영주, 추승우, 홍성룡,
황규복 의원 (17명)

1. 제안 이유

- 의안이 발의된 후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수정될 경우 수정안과 위원회 제안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서 수정한 의안과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의안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3조제3항 신설).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예산 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서 수정한 의안과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의안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p> <p>①·② (생략)</p> <p><u><신설></u></p> <p>③ (생략)</p>	<p>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p> <p>①·② (현행과 같음)</p> <p><u>③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서 수정한 의안과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의안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u></p> <p>④ (현행 제3항과 같음)</p>